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35

발의연월일: 2024. 8. 19.

발 의 자:민홍철·염태영·이재정

양문석 • 양부남 • 정준호

문대림 • 조계원 • 이원택

윤종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하려는 발주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에 대한 평가·공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의 경우 평가·공시하는 숫자가 많을수록 발주자가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가지고 적정한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시공능력 평가제도와 달리평가의 활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평가·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등).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과 건설사업관리 실적, 재무상태 등을 기준으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①·② (생 략)	수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		
	설사업관리업무를 건설사업관		
	리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제23		
	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된 건		
	설사업관리능력과 건설사업관		
	리 실적, 재무상태 등을 기준으		
	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u>③</u> ~ <u>⑥</u> (생 략)	<u>④</u> ~ <u>⑦</u> (현행 제3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u>⑦</u> 제1항부터 <u>제6항</u> 까지의 규	<u>⑧</u> <u>제7항</u>		
정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자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에			
도 적용한다.			
⑧ (생 략)	<u>⑨</u> (현행 제8항과 같음)		